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81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김용민·서영교·박균택
민형배·김기표·박성준
박지원·김동아·김용만
김현정·노종면·전현희
김정호·이상식·채현일
장경태·김승원·이용우
염태영·조계원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함. 또 특별검사는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음.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사건의 수가 많아서 수사 완료일 무렵에는 같은 날에 여러 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는 등 공판 일

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음. 그러나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라며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인하는 등 소송진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아울러,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이첩받으면 증거능력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대신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문제점 때문에 특검은 이첩 요구를 하기 어려움.

따라서 특검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해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는 공소유지권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검사가 수사에 의해 확인한 내용을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반영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지휘 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공소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군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생략)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후단 신설>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③ ~ ⑥ (생략)	<u>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
------------	---